

5. 開發利益還收에 關한 法律 및 施行令中 改正令(案) 立法豫告

建設部公告第1993-70號 1993. 4. 27

1. 개정안의 주요내용

- 가. 현재 개발부담금은 사업기간동안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개발사업시행전에 용도변경이 있는 경우 그 부과개시시점을 앞당겨서 용도변경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함.
- 나. 현재 개발부담금은 1,000평이상(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)의 개발사업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6대도시는 200평, 기타도시계획구역은 300평, 비도시계획구역은 500평이상으로 부과대상규모를 확대함.
- 다. 현재 단순건축행위로 인한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에 대해서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함.
- 라. 현재 개발부담금부과시 착수시점지가는 공시지가, 완료시점지가는 감정평가로 산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착

수시점 및 완료시점지가를 모두 공시지가로 산정하도록 함.

- 마.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한 경우는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도록 하고, 남의 땅을 빌려서 개발한 경우 개발이익이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므로 이때는 토지소유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 징수절차상의 규정을 국세에 준하여 보완함.

2. 의견제출

이 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3년 4월 30일까지 그 의견을 건설부장관(참조: 토지국장, 500-2945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여부와 그 이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